

	규정 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TWP-A707
		제정일자	2021. 01. 06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1/6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21. 01. 06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당	사무처장	교무학생처장	기획예산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

규정

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

문서번호	TWP-A707		
제정일자	2021. 01. 06.		
개정일자	2025. 10. 14.		
제정번호	1	페이지	2/6

	규정 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TWP-A707
		제정일자	2021. 01. 06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3/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이라 한다)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학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성원 : 교직원, 재학생
2. 이해관계자 : 졸업생, 학부모, 산업체, 지역사회(지자체, 지역주민) 등

제3조(책무) ① 우리 대학은 대학교육 운영에 대한 대학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·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.

제4조(운영방법) ① 우리 대학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·소통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내 각종 위원회 참여
 2. 구성원 대상 간담회
 3. 구성원 대상 설명회 또는 공청회(회의, 워크샵, 포럼, 연수 등 포함)
 4. 교육 만족도 및 의견수렴
 5. 온라인 소통 채널(홈페이지 학생게시판 등)
 6. 구성원 대상 제안[별지 제1호 서식]
 7. 기타 참여 및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우리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제1항에서 제시한 참여·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③ 우리 대학은 교육운영을 위한 정부정책, 재정현황, 평가, 사업계획, 사업성과 등의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범위) ① 우리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상의 주요 제도 도입 또는 정책 결정 시에 대학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.

1.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위취득, 성적 및 학점 취득 등에 관한 사항
2. 교직원의 인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7
		제정일자	2021. 01. 06.
	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1

3. 대학 발전계획, 특성화 계획 및 재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

4. 대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5. 기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교육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제도, 사업 등을 위하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절차) ① 대학 운영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·소통 활동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행계획 기안

2. 참여 소통 활동 진행

3. 결과보고 및 의견반영

4. 결과의 활용 및 환류를 통한 사후 관리

② 제4조 1항에 따라 개진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 절차를 따른다.

1.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가 가능한 의견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시 결정할 수 있다.

2.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필요로 하는 의견은 소관 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

3. 구성원 협의가 필요한 의견은 회의체, TF팀, 간담회, 공청회, 설문조사 등 협의 방법을 거친 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.

③ 참여 · 소통 활동을 통해 환류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참여·소통 활동 결과를 반영한 기안문을 작성하여 시행한다.

④ 제4조 1항 운영 결과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, 아이디어는 담당 부서의 타당성 및 실용성 검토를 거쳐 행정조직, 각종 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대학 발전 및 주요 운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2. 대학 발전 및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의견,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.

제7조(사후관리) 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· 소통 활동은 투명성 확보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일시, 장소, 참석자, 내용이 명시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사업이나 제도 시행 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의견수렴의 결과를 적용하여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기타) 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·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

	규정 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TWP-A707
		제정일자	2021. 01. 06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5/6

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7
		제정일자	2021. 01. 06.
	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6/6

[별지 제1호 서식] 대학 발전 및 운영 개선 제안서 양식

대학 발전 및 운영 개선 제안서

◎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수집 항목	수집 목적 및 활용	보유 및 이용 기간
성명, 소속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	대학 발전 및 운영 개선 제안서 접수 및 관리	반영구

※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에는 대학 발전 및 운영 개선 제안 신청(제출)이 불가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

제출 일자 : 20 년 월 일

제안자 : (인 / 서명)

동원대학교 귀하